

과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

제정 2019.12.31. 규정 제4호

개정 2020.5.8. 규정 제3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3항 및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의 사장 및 감사,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. 이하 “임원” 이라 한다)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과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공사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,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남성과 여성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정수의 80%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
3.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경제 관련단체의 임원

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
4. 공인회계사
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⑤ 공사의 임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시 소속 공무원(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4조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존속)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제6조(임무)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

2. 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

3. 상임이사(본부장)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

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추천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공사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

2.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

3.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임원후보자의 모집) ①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, 「지방공기업법」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과천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함

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면 재공고를 실시하고,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후 2배수 추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④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

제10조(임원후보 응모자격) ①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의 “임원결격사유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사장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(재투자기관 포함) 혹은 출연기관의 상임 임원(기업의 경영에 상근하여 직접 참여한 자)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2. 상장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임임원(기업의 경영에 상근하여 직접 참여한 자)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4. 정부투자기관·공기업 등에서 공무원 4급 이상 상당직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
5. 과천도시공사(공단 포함)에서 3급이상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
6.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경영 및 공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(신설 2020.05.08.)
7.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

③ 상임이사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
2. 과천도시공사(공단 포함)에서 3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
3. 정부투자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공무원 5급이상 상당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

④ 비상임이사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공사업무 관련분야 전문가
2.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

3. 기타 경영 및 문화예술·체육분야 전문가

⑤ 제1항 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및 해당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. 다만,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 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제출서류)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
2. 직무수행계획서(비상임이사 제외)
3. 자기소개서
4.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관련 자격증(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)
5.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

제12조(심사기준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.

1.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
2. 경력·학위 등 경영·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
3. 과거의 경영실적·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
4.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.

제13조(심사절차 및 방법)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,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(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)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.

④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,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.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,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.

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

상대평가 한다.

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
제14조(임원 후보의 추천)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공고를 통해서도 배수 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면 사장 및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장, 상임이사의 경우는 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지 제5호서식 세부추천사유 별지 제6호서식 및 선발경과 요약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 또는 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⑥ 시장 또는 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

⑦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5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,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사무협조)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7조(채용과정 공개) 시장 또는 사장은 임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한다. 다만,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,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기타 위

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·기피·회피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를 공지 하여야 한다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후보자인 경우
2.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3.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

제20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규정 제37호, 개정 2020.5.0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(사장) (제12조제2항 관련)

구 분	세 부 기 준
경영·경제와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민경제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· 경력·학위 등 경영·경제에 관한 지식 · 선도적인 초우량 기업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
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규모 공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·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·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
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,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·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· 건전한 도덕성, 청렴성,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·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
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· 과천시·시의회·이용고객 및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
리더십, 윤리관, 인품 등 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, 윤리관,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면접을 통해 평가

[별표 2]

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(임원) (제12조제2항 관련)

구 분	세 부 기 준
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·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·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
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· 건전한 기업윤리관, 청렴성,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
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·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
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· 지방공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
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 수지균형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·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

[별지 제1호서식]

서류심사 평가표 (사장) (제13조제6항 관련)

후 보 명 :

평가요소	배 점	평가점수				
		A (25점)	B (23점)	C (21점)	D (19점)	E (17점)
경영·경제와 공공서비스분야의 전문적 지식	25점					
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	25점					
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	25점					
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	25점					
합 계	100점	점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√” 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년 월 일

심사위원 : (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서류심사 평가표(임원) (제13조제6항 관련)

후 보 명 :

평가요소	배 점	평가점수				
		A (20점)	B (18점)	C (16점)	D (14점)	E (12점)
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	20점					
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	20점					
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	20점					
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	20점					
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	20점					
합 계	100점	점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V” 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년 월 일

심사위원 : (인)

면접심사 평가표 (제13조제6항 관련)

지원자 성명 :

구 분	평 가 항 목	점 수					점수 (/만점)
		수	우	미	양	가	
사람의 이해능력 (30)	1.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	5	4	3	2	1	/30
	2.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	5	4	3	2	1	
	3.직원의 안전과 공사의 위기관리능력	5	4	3	2	1	
	4.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	5	4	3	2	1	
	5.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	5	4	3	2	1	
	6.사람을 잘 관찰하고 판단하는 능력	5	4	3	2	1	
전문성 (20)	1.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	5	4	3	2	1	/20
	2.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	5	4	3	2	1	
	3.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	5	4	3	2	1	
	4.환경변화예측을 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	5	4	3	2	1	
리더십 (20)	1.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	5	4	3	2	1	/20
	2.술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	5	4	3	2	1	
	3.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·조정하는 협상능력	5	4	3	2	1	
	4.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	5	4	3	2	1	
변화와 혁신능력 (10)	1.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	5	4	3	2	1	/10
	2.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	5	4	3	2	1	
윤리관 (10)	1.준법경영, 투명경영 등 윤리경영 인식	5	4	3	2	1	/10
	2.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	5	4	3	2	1	
건 강 (10)	1.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술선하는 능력	5	4	3	2	1	/10
	2.대인관계,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	5	4	3	2	1	
합 계						/100	

위와 같이 심사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 :

(서명)

[별지 제4호서식]

임원후보자 추천서 (제14조제4항 관련)

과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과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복수 추천하기로 결정함

【과천도시공사 ○○○ 추천 후보】

연번	성명	생년월일	비고

*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

20 년 월 일

과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	위원장	(서명)
	위원	(서명)
	위원	(서명)
	위원	(서명)
	위원	(서명)
	위원	(서명)
	위원	(서명)

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(제14조제4항 관련)

성명 (성별)	거주지 (생년월일)	학 력	주 요 경 력
(예시) ○○○ (남)	충청 (1960.12.10.)	○○고등학교 ○○대 ○○학과 ○○대 ○○학 박사	○○○○○○○○소장(현) ○○○○○○ 사외이사 ○○○○○ 자문위원

- ※ 1. 거주지는 광역단체 단위로 기재(예 : 서울, 경기, 부산)
- 2. 생년월일은 ○○○○.○○.○○.(예 : 1958.06.18.)로 기재
- 3. 성명 밑에 성별 기재
- 4. 주요경력은 최근 경력 순으로 기재

[별지 제6호서식]

임원 세부 추천사유 (제14조제4항 관련)

성 명	현 직	추 천 사 유
(예시) ○○○	○○○○○소장	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(100자 내외)

[별지 제7호서식]

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(제14조제4항 관련)

1. 선발개요

가. ○○직위(성명 :○○○)의 임기만료(20○○.○.○)에 따른 후임자 선발

나. 선발방법

- 근거 :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
- 방법 : 공개모집, 추천방식,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중 택일
-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

구분	기간	인원	접수기간	비고
1차 공개모집		공개모집 ○명 추천방식 ○명		추천방식 병행
2차 공개모집				

다.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: 20○○.○.○(월) 10:00, 임원회의실

- 응모자 ○명 중 ○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

2. 모집개요

가. 1차 공고

- ○○신문(201○.○.○)
- 행정안전부/지방자치단체/기타 인터넷 등(20○○.○.○ ~ ○.○),
해당 지방공사·공단 홈페이지(20○○.○.○ ~ ○.○)
- 각종 유관기관, 단체 등 공문발송 (필요시)

※ 접수기간 : 20○○.○.○부터 20○○.○.○까지(○일간)

나. 2차 공고 (필요시)

○ ○○신문(201○.○.○)

○ 행정안전부/지방자치단체/기타 인터넷 등(20○○.○.○ ~ ○.○),

해당 지방공사·공단 홈페이지(20○○.○.○ ~ ○.○)

※ 접수기간 : 20○○.○.○부터 20○○.○.○까지(○일간)

3. 응시자 현황 : ○ 명

응시번호	성 명 (생년월일)	학 력	주요경력	비 고
				공개모집
				추천

* 학력은 고등학교,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

*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, 경력별로 재직기간(부터 ~ 까지) 기재

4.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(총 7명)

유 형	성 명 (성별)	소속 및 직위	주 요 경 력	비 고
자치단체장 추천				학 계
〃				경제계
지방의회 추천				언론계
〃				노동계
〃				법조계
이사회 추천				회계사
〃				세무사